

뉴저지한인목사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뉴저지한인목사회' (The Korean-American Clergy Association of New Jersey, KACANJ)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위치) 본회는 미합중국 뉴저지 (New Jersey, USA)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뉴저지 안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한인 목사간에 믿음의 친교와 사랑의 봉사와 진리의 연구를 도모함으로 한인교회 및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협동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자격) 본회의 회원 자격은 뉴저지에 거주하는 목사로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소속 기관 발행 목사안수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의 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단,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회원교회 담임목사는 자동회원이 된다.

제 5 조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과 회칙 준수와 규정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최근 3년의 회비를 완납해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 조 (정지) 본회의 의무 불이행 및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은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7 조 (임원과 임무) 본회의 임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1인: 본회의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3. 총무 1인: 회장을 도와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한다.
4. 협동 총무 약간 명: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5. 서기 1인: 본회의 각종 회의록 보관과 공문 수발, 기타 서류 일체를 담당한다.
6. 부서기 1인: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7. 회계 1인: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8. 부회계 1인: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행한다.

제 8 조 (위원회) 본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목회분과: 목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2. 교육분과: 교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3. 선교분과: 선교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4. 음악분과: 음악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5. 체육분과: 체육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6. 경조분과: 애경사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7. 원로분과: 원로 목사회에 관한 부분을 담당한다.

제 9 조 (감사) 본 회의 감사는 총회에서 2 인을 선출하고, 본 회의 재정 감사를 담당한다.

제 4 장 선거 및 임기

제 10 조 (선거)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은 현 부회장을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공천위원회에서 다른 회장 후보를 낸다.
2. 부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자를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공천위원회는 만 70 세 이전의 본 회 전직 회장들로 구성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4. 회장과 부회장 외의 모든 임원들은 회장단에서 선정한다.
5. 각 분과 위원회는 임원단에서 선임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제 11 조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1 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 5 장 회의

제 12 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 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9 월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 보고 및 계획, 임원 선출, 회칙 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회의 소집은 15 일 전에 공고한다.
2. 임시 총회: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각 분과 위원장의 모임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성원) 본 회의 회의 성원은 당일 출석자로 한다.

제 6 장 재정

제 14 조 (수입 및 지출) 본 회의 재정 수입은 회비, 헌금, 특별찬조, 기타 협찬금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임원회 결의로 집행한다.

제 15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산하 기구

제 16 조 (뉴저지 남성목사 합창단)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제 17 조 (뉴저지 목사 축구 선교단)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제 18 조 (여성 목사 합창단) 본 회 산하 기구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제 19 조 (산하 기구 행정 조직) 본 회 산하 기구로 행정 조직은 단장과 총무를 두되, 본 회의 인준을 받는다. 기타 임원과 활동은 내규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제 20 조 (산하 기구 가입조건) 각 산하 단체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목사회 회원이어야 한다.

부칙

제 1 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 조 (세칙) 본 회의 회칙 보완을 위해 총회 인준의 세칙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 조 (발효) 본 회의 회칙은 통과 즉시 발효한다.

*** 이상 전문 7 장 20 조, 부칙 3 조***

주후 2010년 05월 10일 창립 제정

주후 2010년 07월 13일 개정

주후 2015년 08월 03일 개정

주후 2018년 07월 02일 개정

주후 2020년 09월 01일 개정

주후 2021년 09월 27일 개정

주후 2022년 10월 6일 개정